

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

A Review on the Right to Erasure (Right to Be Forgotten) under the Korean Law

최자림(Ja-rim Choi)*

〈목 차〉

- I. 논의의 배경
- II. GDPR의 잊힐 권리
- III. 우리나라 법률상 잊힐 권리의 태양
- IV. 잊힐 권리의 보호 대상에 대한 검토
- V. 결어

요약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EU “일반개인정보 보호법(이하 GDPR)”은 제17조에서 삭제권(잊힐 권리)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꾸준히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인격권에 기해 삭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EU GDPR의 잊힐 권리와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은 검색 결과 목록 삭제 청구권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날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서 잊힐 권리가 등장한 배경을 고려하여 잊힐 권리의 개념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법제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 잊힐 권리의 등장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유통에 제약이 된다. 따라서 잊힐 권리의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I. 논의의 배경

EU는 2018년 5월 25일부터 개인정보 처리와 이동에 관한 “일반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시행하였다. GDPR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넓은 지리적 적용범위를 예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물론 기업의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GDPR 제17조(Right to erasure (‘right to be forgotten’)) 제1항에서 삭제권(잊힐 권리)을 규정하면서, 그동안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던 ‘잊힐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GDPR 제17조 제1항은, 잊힐 권리를 “정보가 수집 혹은 기타 처리된 목적과 관

련하여 필요성을 상실하였거나, 개인정보주체가 정보 처리의 기반이 되는 동의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확산, 그로 인한 개인의 피해 호소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만약 인터넷에 정보주체가 공개와 유통을 원치 않는 정보가 게시된다면 정보주체에게 어떤 범위에서 이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아래에서는 먼저 GDPR 및 우리 법제 하에서 정보주체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잊힐 권리의 개념이나 그 도입 여부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 영역이며 우리 법제상으로도 이미 잊힐 권리의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권리가 있으므로, 잊힐 권리 개념의 검토를 통해 잊힐 권리의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GDPR의 잊힐 권리

1. GDPR의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GDPR에서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가리킨다. 식별가능한 자연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히 이름, 식별번호, 위치정보, 온라인 식별자를 참조하거나 해당인의 신체적, 심리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에 특이한 하나 이상의 요인을 참조함으로써 식별될 수 있는 자를 가리킨다(제4조 제1항).

GDPR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단독으로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및 방법을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기관, 기관, 기타 기구를 가리킨다. 이때 ‘처리’라 함은 자동화 수단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

계없이 단일의 또는 일련의 개인정보에 행해지는 단일 작업이나 일련의 작업으로서, 수집, 기록, 편집(organisation), 구성, 저장, 가공 또는 변경(adaptation or alteration), 검색(retrieval), 참조(consultation), 사용, 이전을 통한 제공, 배포나 기타 방식으로의 제공(dissemination or otherwise making available), 연동이나 연계(alignment or combination), 제한, 삭제 또는 파괴 등이 이에 해당한다(제4조 제2항 및 제7항).

GDPR에서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처리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개인정보주체가 하나 이상의 특정 목적에 대해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한 경우
- (b) 개인정보주체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체결 전 개인정보주체가 요청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
- (c)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데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 (d)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에 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 (e) 공익을 위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공식권한을 행사하여 이루어지는 업무수행에 처리가 필요한 경우
- (f)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목적을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주체의 이익 또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우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정보주체가 어린이인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f)호는 공공기관이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GDPR의 영토적 적용범위

GDPR은 유럽연합 역내의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의 사업장의 활동에 수반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되고, 이때 처리가 유럽연합 역내 또는 역외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관계없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 이하 ‘잊힐 권리’라고 한다.

다(제3조 제1항). 즉 GDPR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EU 안에서 이루어지든 밖에서 이루어지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밖에서 클라우드로 정보를 처리하더라도 GDPR이 적용된다.

또한 GDPR은 유럽연합 역내에 설립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라 해도 유럽연합 내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유럽연합 역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주체의 행태를 모니터링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상품이나 재화를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적용된다.²⁾ 이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요소에는, ① 언어(소재 또는 거주 국가의 고객과 관련 없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언어를 사용) ②통화(소재 또는 거주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통화를 사용) ③도메인 이름(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이 유럽연합 회원국의 최상위 도메인 명칭을 사용함. 예 : de, fr 등) ④회원국 시민 언급(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을 언급함) ⑤소비자 기반(유럽연합 내에 높은 비율의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음) 광고 타게팅(유럽연합 회원국의 정보주체를 목표로 광고를 제공함 등)이 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활동을 모니터링 한다는 의미는 그의 활동을 감시(surveillance)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적(tracking)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춤형 광고의 제공을 위한 이용자 브라우징 정보를 수집, 추적, 분석하는 행위는 모니터링에 해당한다.³⁾ 이러한 GDPR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유럽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수출하는 기업, 시청각콘텐츠 공급 기업, 소비재와 IoT를 결합한 B2C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제조기업에는 GDPR이 적용된다.⁴⁾

3. 잊힐 권리의 내용

가. 잊힐 권리의 행사 조건

GDPR 제17조는 “개인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부당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a)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혹은 기타 처리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성을 상실한 경우
- (b) 개인정보주체가 제6조 제1항의 (a) 또는 제9조 제2항의 (a)의 처리의 근거가 된 동의를 철회하고, 해당 정보의 처리에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 (c) 개인정보주체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리에 반대하고 관련 처리에 대해 우선하는 정당한 근거가 없거나, 개인정보주체가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 (d)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처리된 경우
- (e)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삭제되어야 하는 경우
- (f)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보화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수집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잊힐

권리의 요건이 충족되어 개인정보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한 기술과 시행 비용을 참작하여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링크, 사본 또는 복제본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을 고지하기 위한 기술의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이 조항은 GDPR의 탄생 배경이 되었던 ECJ의 판결, 일명 ‘구글 스페인 사건’⁵⁾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구글 스페인 사건에서 Costeja의 구글에 대한 잊힐 권리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Yahoo나 Bing 등 다른 검색엔진에서 동일한 링크가 나타나면 다른 검색엔진들도 구글 스페인 결정에 따라야 하는지는 불분명했다. 위 GDPR 규정에 따르면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들은 해당 개인이 유효한 잊힐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지받게 된다. 통지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들은 자신들도 소재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링크를 삭제할 것이며, 이는 GDPR의 보다 통일적인 적용을 확실히 한다.⁶⁾

나. 적용 예외 사유

GDPR 제17조에서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삭제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가 당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a)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
- (b) 개인정보처리자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공익을 위해서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된 공적권한을 행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c) 제9조 제3항뿐만 아니라 제9조 제2항의 (h) 및 (i)호에 따른 공중보건 분야의 공익상의 이유인 경우
- (d) 제89조 제1항에 따른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권리가

- 그 처리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e) 법적 권리의 확립,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한 경우

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일반적인 삭제 의무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GDPR 제17조는 개인정보주체가 열거한 상황 하에서 잊힐 권리를 가진다고만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상황 하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삭제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 형태는, 개인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도 삭제 의무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⁷⁾

제17조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에 따라 삭제되어야 하거나 (잊힐 권리 행사 조건 중 (e)항) 혹은 개인정보주체가 정보처리에 대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때, 특히 동의를 철회하거나 처리에 반대할 때(잊힐 권리 행사 조건 중 (b)항)에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다른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다. 많은 경우, 불법적 처리(잊

2) 제3조 영토의 범위

1. 본 규정은 유럽연합 역내의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의 사업장의 활동에 수반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되고, 이때 해당 처리가 유럽연합 역내 또는 역외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관계없다.
2. 본 규정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다음 각호와 관련되는 경우, 유럽연합 역내에 설립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가 유럽연합 역내에 거주하는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적용된다.
 - (a) 개인정보주체가 지불을 해야 하는지에 관계없이 유럽연합 역내의 개인정보주체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
 - (b) 유럽연합 역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주체의 행태를 모니터링
3. 본 규정은 유럽연합 역내에 설립되지 않았으나 국제 공법에 의해 회원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장소에 설립된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적용된다.
- 3)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우리 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1차 가이드라인, 2017, 16-17면.
- 4) KOTRA, EU의 일반개인정보 보호법(GDPR) 발효와 대응과제, 2018, 4면.

- 5)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Mario Costeja Gonzalez)는 1998년 ‘라 방가르디아(La Vanguardia)’ 신문에 게재된 자신의 채무 및 재산 강제매각 기사가 2009년까지 구글에서 검색되자,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AEPD, Agencia Espanola de Proteccion de Datos, 개인정보보호)에 이를 삭제할 것을 라 방가르디아와 구글에 청구하였다. AEPD는 라 방가르디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나, 구글에 대해서는 해당 링크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구글은 이에 대해 스페인 고등법원에 이의하였고, 스페인 고등법원은 해당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ECJ에 예비판결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ECJ는, 유럽개인정보 보호지침(Directive 95/46/EC) 제12조 (b) 및 제14조 (a)에 규정된 권리는, 제3자에 의해 작성, 게시된 정보를 인덱싱하여 제공하는 검색엔진의 운영자에게, 원래의 정보나 웹페이지의 삭제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검색 목록에서 제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 6) Stefania Alessi, “ETERNAL SUNSHINE :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EUROPEAN UNION AFTER THE 2016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32, 2017, p.164.
- 7) P.T.J. Wolters, “THE CONTROL BY AND RIGHTS OF THE DATA SUBJECT UNDER THE GDPR”, Journal of Internet Law, Vol. 22, No. 1, 2018, p.9.

힐 권리 행사 조건 중 (d)항)는 개인정보의 삭제 없이도 치유될 수 있다. 개인정보주체가 추가적인 적절한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라면 삭제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아동에 대한 정보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잊힐 권리 행사 조건 중 (f)항) 정보 삭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GDPR 제8조 제1항⁸⁾은 이러한 데이터의 처리가 허용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⁹⁾

따라서, GDPR의 잊힐 권리가 개인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때에도 개인정보를 삭제할 일반적인 의무를 창설한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GDPR 하에서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처리대상 정보에 대해 잊힐 권리를 행사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를 구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구글 스페인 사건’에서 ECJ는 GDPR의 전신인 Directive 95/46/EC¹⁰⁾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는 제12조(b) (정보접근권 및 삭제·차단요구) 및 제14조(a) (정보처리의 중단 요구)의 권리를 행사하여, 제3자에 의해 출판, 게시된 정보 및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에 대하여 특정 개인의 성명에 기초한 검색결과를 보

여주는 검색엔진의 운영자에게 원래의 정보나 웹 페이지의 삭제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검색 목록에서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삭제 요구에 대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정보의 성격, 정보주체의 사생활에 대한 영향, 해당 정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정보주체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공정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¹¹⁾ 즉 EU 규범 하에서 인정되는 잊힐 권리란 정보 자체에 대한 삭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정보에 대한 링크 삭제, 검색 결과 목록의 삭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되며, 이때 정보의 성격, 대중의 관심 등이 권리 행사 가부의 판단기준이 된다.

III. 우리나라 법률상 잊힐 권리의 태양

1. 서론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 환경 하에서 무제한적으로 유통되면서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또한 이러한 정보 자체에 특별히 문제가 없음에도 정보주체가 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앞서 본 구글 스페인 판결 역시 잊힐 권리가 등장한 배경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ECJ가 잊힐 권리를 인정한 것은 개인과 관련된 낡고 오래된 정보가 검색엔진과 SNS의 발달로 손쉽게 대중에게 노출되어 정보주체가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즉 과거라면 거의 노출되지 않을 정보가 검색엔진을 통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서 일어나는 피해이다.¹²⁾

이처럼 잊힐 권리의 개념은 인터넷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유통, 확산되는 정보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잊

힐 권리는 권리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우리나라 실정법상 잊힐 권리라는 단일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잊힐 권리라는 개념 자체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잊힐 권리는 오늘날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서 정보주체가 정보를 통제할 권리로 칭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개념 정의가 존재하며, 법적 권리로서의 내용과 행사 범위는 실정법이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의 권리가 잊힐 권리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을 잊힐 권리의 측면에서 논의하기도 하므로 이를 아래에서 차례로 검토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 정정, 삭제권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제35조), 이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제36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의 중지(제37조)를 요구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정보주체가 직접 제공한 개인정보, 서비스제공 등의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삭제권 등의 한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파일 형태로 운용 및 보관하는 개인정보만이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제2조 제4호 내지 제5호).¹³⁾ 따라서 정보주체가 직접 인터넷에 올린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삭제권 등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또한 원본 정보를 제3자가 복제하였거나 링크한 경우나, 제3자가 직접 인터넷에 게시한 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삭제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언론, 종교단체, 정당 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제58조 제1항 제4호)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언론사가 취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정, 삭제 등이 어려울 것이다.

다.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적용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관계에서는 해당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른다. 2018. 6. 12. 개정¹⁴⁾된 정보통신망법은 제5조에서 법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정합하거나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정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8) 1. 제6조(1)의 (a)호가 적용되는 경우, 아동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의 처리는 해당 아동이 최소 16세 이상인 경우에 적법하다. 아동이 16세 미만인 경우, 그 같은 처리는 해당 아동의 친권을 보유한 자가 동의를 제공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만 적법하다.

회원국은 상기의 목적에 대한 아동의 연령을 법률로서 낮추어 규정할 수 있으나, 해당 연령이 13세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9) P.T.J. Wolters, 위 논문, 같은 면.

10) 인터넷 환경을 예정하지 않은 Directive 95/46/EC가 인터넷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이에 대한 ECJ의 해석이 있었다.

11) 김형준 등,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본부 국가정보화기획부, “‘잊힐 권리’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분석 및 시사점”, 정보화 법제연구, 제3호(2014), 5면.

12) 구본권,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잊혀질 권리’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Vol 132(2014), 19면.

13) 유충호, “잊힐 권리의 민사법적 쟁점과 입법적 연구”, 法學論文集(CHUNG-ANG JOURNAL OF LEGAL STUDIES), 제42권 1호(2018), 121면.

14) 2018. 12. 13. 시행.

관하여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정합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3. 정보통신망법

가.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철회, 정정 청구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0조 제3항). 또한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열람을 청구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30조 제2항, 제4항).

앞서 살핀 것처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또한 위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집·이용·제공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보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타인에 의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살피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요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

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제44조의2 제1항).

위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는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제44조의2에 따라 제3자가 게시한 정보가 삭제되는 경우, 제3자가 게시한 정보는 본래 삭제 권한이 제3자에게 있지 개인정보주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결부되므로 개인정보주체의 요청만으로 해당 정보의 즉각적 삭제가 가능하다면 이는 제3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위 조항에 따른 삭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생활 또는 명예의 침해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앞서는 법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직접 권리침해의 판단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래 다.항의 임시적 접근 차단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¹⁵⁾

또한 정보주체는 정보통신망법상으로는 문제되는 정보를 게재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삭제 등의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구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의 임시조치는 최장 30일간 정보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주체의 입장에서는 정보의 유통 및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

다. 임시조치

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제44조의2 제1항, 제4항).

임시조치의 최장 기간은 30일이며, 임시조치 기간 내의 게시자의 이의제기나 임시조치 기간 종료 이후의 당사자 간의 분쟁 등 그 이후의 분쟁해결절차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네이버의 경우 게시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30일 이후 해당 자료를 복원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자료를 영구히 삭제한다고 한다.

4.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2016년 6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는 본인이 작성한 글(댓글 포함)이나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과 관련하여 ① 본인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삭제가 안 될 경우, ②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불가능 할 때, ③ 회원정보 분실로 직접 삭제가 어려울 때, ④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판 운영을 중단한 때, ⑤ 게시물 삭제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을 때, 해당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게시판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접근배제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가이드라인은 자기 게시물만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사자 간의 이익이 충돌하면서 삭제권이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보다는 제3자가 올린 게시물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례일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정보를 삭제하기를 원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큰 권리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5.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

가. 검토의 배경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의 삭제, 정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에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가 직접 올린 정보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삭제 기능을 통해 직접 삭제할 수 있거나,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제공된 개인정보나 정보주체가 직접 인터넷에 게시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법제 하에서도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주체가 게재한 정보를 제3자가 복제하여 다시 업로드 하였거나, 링크하였거나, 제3자가 직접 게재한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삭제권 행사를 통해 삭제하기는 어렵다.¹⁶⁾ 따라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범위를 넘어 정보에 대한 삭제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사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청구의 근거로는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들어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한다.

나. 제3자에 대한 삭제청구

대법원은 꾸준히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15) 송백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및 행정규제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16권 제1호(2012), 25면.

16)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가 유통시킨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활용할 수 있으나, 그 청구의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여서 해당 정보를 게시한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으며,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직접 권리침해의 판단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최장 30일의 임시적인 블라인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인격권의 성격상 사전적 예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¹⁷⁾ 따라서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가 현존하거나 또는 침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주체는 이러한 정보를 게재 또는 게재하려는 자를 상대로 하여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으로서 정보의 삭제 또는 장래의 정보 게재 금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에서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하여 사후에 인격권을 이유로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면서,¹⁸⁾ “한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

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 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인격권에 기초한 기사삭제청구의 요건으로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어떠한 기사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정정·반론보도나 손해배상만으로는 침해된 인격권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격권에서 비롯되는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 기사삭제를 허용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법원은 인격권을 근거로 기사삭제를 구하는 경우,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각되는 위법성은 문제되는 표현을 할 당시의 행위위법에 관련된 것이다. 반면 보도 이후 등 문제되는 표현 행위가 현재 존재하는 상태는 해당 표현의 존재 자체로 인한 상태위법과 관련되므로, 이러한 위법 상태를 과거의 행위위법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 해소할 수는 없다.¹⁹⁾ 이와 같은 점에서 위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인격권의 침해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방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예방적인 금지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금지청구를 인용할지의 여부 역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사안에 따라 비교형량 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삭제청구

제3자에 의해 자신의 정보가 게시된 경우 정보주체는 우선 그 게시자인 제3자를 상대로 삭제

등의 조치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삭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게시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삭제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사이트의 운영자를 상대로 삭제 등의 조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는 문제되는 정보를 게시한 자를 특정하기 쉬운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삭제하기 쉬운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는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정보를 삭제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 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3. 6. 27, 2002다72194). 대법원 역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삭제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삭제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삭제의무는 문제된 정보가 게재된 사정을 둘러싼 개별적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는 문제되는 정보를 올린 제3자뿐만 아니라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문제되는 정보가 어떤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가해자가 게시한 정보에 대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삭제를 요구하였거나, 지속적으로 반박 게시물을 올렸던 사정이 있으며, 회원 수 등 사이트의 규모를 고려할 때 운영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삭제 청구가 인용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카합1661 사건에서, 이러한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인터넷 운영자에게 게시글의 삭제를 명한 바 있다. 위 사건에서,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인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에 신청인을 ‘강간범, 성폭력범’등으로 지칭하거나 욕설 등으로 모욕, 비하하거나 인신공격하는 게시글 또는 댓글이 계속적으로 게시되자 위 게시글의 삭제 등 조치 요구를 하였고, 삭제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자 피신청인이 이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신청인이 위 사이트를 통해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고, 신청인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계속하여 비방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고 피신청인이 삭제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비방게시물이 올라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에게 게시물의 삭제를 명하였다.²⁰⁾

그런데, 대법원은 2009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

17)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른 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참조),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2775 판결 참조), 사람(종중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이 갖는 이와 같은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 회복에 필요한 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금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7. 10. 24, 96다17851).

18) 위 사건에서 피고는 뉴스 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독교방송, 라디오 등 통합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총 57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 원고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였고, 원심 판결은 피고에게 위 기사 중 8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에 대한 삭제를 명하였으며 이는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19) 유재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방해제거청구권 - 이미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를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37(2015), 465면.

20) 구체적으로, 법원은 피신청인이 6개월 동안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게시물을 특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게시물을 인터넷사이트에서 삭제할 것을 결정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지속시간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5만원을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명령을 함께 하였다.

에 관하여 중요한 판단을 한 바 있다(대판 2009. 4. 16, 2008다53812). 이 사건에서 대법원 다수의 의견은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즉 위 대법원 판결은 위 2003년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의 책임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판결에 따르면 개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는 일반적인 게시물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지게 된다.^{21) 22)}

IV. 잊힐 권리의 보호 대상에 대한 검토

이상과 같이 우리 법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상의 권리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의 잊힐 권리와 유사한 권리를 두고 있다. 한편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을 잊힐 권리의 배경에서 논의하기도 하나, 이는 정보 자체를 삭제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정보주체에 관한 낯은 정보에 대하여 검색을 차단하는 EU의 잊힐 권리의 개념과는 그 결을 달리한다. 그리고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는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를 그 행사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잊힐 권리는 정보 자체에 문제가 없음에도 그 정보가 부적절하거나 관련이 없거나 과도할 경우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자 권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도 위 구글 스페인 판결에서 인정된 잊힐 권리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 법제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 자체의 삭제가 가능하므로 오히려 더 적극적인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서는 잊힐 권리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새로운 정보

통신 환경 하에서 개인의 보호가 새롭게 요구되는 영역이 있는지, 이러한 영역이 존재한다면 어떠한 한계에서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와 삭제라는 현상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삭제권,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 등의 보호대상이 개인정보 그 자체인 것은 아니다. 특히 정보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정보주체의 요구만으로 무조건적인 삭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정보 삭제 내지 접근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해당 정보 자체가 법적 보호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정보의 삭제를 통해 보호되는 법익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타인에 대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법적인 제재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라고 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 즉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지 적시된 사실 자체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에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는 단순히 정보주체가 느끼는 불쾌감만을 이유로 삭제 등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잊힐 권리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다른 법익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이 스스로 한 표현이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법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서 보호대상이 되어야 할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보이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스페인 판결에서 인정된 것과 같은 검색 결과 목록에 대한 삭제를 구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향후 국내에서 잊힐 권리의 개념을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정보가 과도하게 생성·유통·노출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개인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살핀 것처럼 판례는 인격권에 기한 삭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의 법리를 발전시키면 인격을 근거로 검색 목록 삭제권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권리를 별도로 입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정보주체의 삭제권이 인정되면 인터넷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나 제3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그러므로 잊힐 권리의 도입이나 그 내용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권리 행사 범위의 한계를 정하고, 나아가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잊힐 권리의 보호법익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사생활의 보호와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따른 일반적 인격권을 근거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²³⁾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설명한다.²⁴⁾

그런데 잊힐 권리의 개념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인격적 이익에서 찾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것처럼 명예, 사생활의 보호와 자유 등의 법

21)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만약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게 일반적인 삭제의무가 있다고 보면, 이는 사적 주체에 의한 검열을 사실상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무수한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상시적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삭제의무의 발생 조건으로 대법원 다수의 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불법성의 명백함’,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남’ 등의 기준 역시 불명확하여 결국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게 상시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특히 불법성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에게도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를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판단하여 특정 게시물을 선별하여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라고 생각된다.

22) 한편 위 2013카합1661 가처분 사건에서도 신청인이 2009년 전원합의체판결의 적용을 주장했다, 법원은 포털사이트에 관한 사안이 아니므로 2009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 등에 다른 사람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참조, 한편, 신청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사업자’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3)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24)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익은 기존의 법리를 통해서도 이미 보호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잊힐 권리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잊힐 권리의 등장 배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개인정보가 수집·유통 및 이용되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국가나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가 공개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복제되어 확산되는 정보,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생산하여 유통되는 정보, 특히 SNS나 검색엔진과 같은 인터넷 환경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확산되는 정보로 인한 피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필요 역시 크다. 또한 개인에 대한 정보는 오로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한 개인의 외부적인 인격상은 타인의 평가로 정해지며, 개인에 대한 정보가 이러한 평가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위해서는 인격상 결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호되어야 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내용에는 국가 등 개인정보 수집자가 수집한 정보에 대한 삭제권을 요구할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인격을 평가할 기초가 되는 정보에 대한 통제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청소년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 사건’²⁵⁾에서, 위헌의견은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였다. 위헌의견은, “사회 활동을 통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서는,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인자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자료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여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잊힐 권리라는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함께 파악하면, 잊힐 권리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 보호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 번 생성된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저장장소의 접근이 어려워 사실상 소멸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 생성된 정보는 순식간에 확산되고 무수한 링크·복제를 통해 시간이 지나도 처음 정보가 생성된 시기와 유사한 정도로 생생하게 전달된다. 또한 수개의 정보가 관련성이 있거나 연속적인 것임에도 각 정보의 특성상 확산의 정도에 차이가 생겨 일부 정보, 특히 부정적인 부분만이 널리 알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가 시의성이나 공익성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청소년 시절에 대한 정보가 성인인 이후까지 유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타인의 인격상 판단의 기초가 되기에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거나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현재의 개인에 대한 인격상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기에 적절치 않거나, 현재의 개인과 관련성이 희박한 자료가 인터넷 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계속해서 매우 높은 접근성을 가진 상태로 존재한다면 이는 개인의 현재의 인격상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가져올 수 있다. 즉 과거의 자료가 무제한·무차별적으로 현재의 인격상 결정에 사용되는 것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특정 정보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높은 공개성·접근성을 감소시킬 권리를 인정하여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특정 검색 결과 목록의 삭제를 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면 검색엔진 사업자는 해당 정보의 생성에는 관여한 바 없음에도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검색엔진이 정보를 인덱싱한 뒤 이용자들의 검색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킨 행위 자체가 정보주체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된다거나 책임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수집하여 검색에 제공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이용자들 간에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터넷 환경이 본래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색엔진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검색 목록 삭제 등의 차단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앞서 살핀 것처럼 잊힐 권리가 정보의 광범위한 유통으로 인해 현재의 인격상에 대한 왜곡이 발생함에 따른 인격적 이익의 침해를 막으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색 엔진을 통해 낡고 부적절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인격상에 대한 편견과 왜곡이 발생함으로써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색 엔진이 인격적 법익 침해에 따른 책임을 독자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⁶⁾

V. 결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권리, 자기 게시물에 대한 접근요청권을 통해 정보주체가 제공한 정보나 게시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할 권리가 실현되고 있으며, 제3자가 게시한 정보의 경우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별법과 일반 민사법 하에서 각 잊힐 권리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검색 결과 목록에 대한 삭제권을 인정하는 구글 스페인 판결에서 인정된 잊힐 권리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의 삭제권이나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은 일정한 요건 하에 정보 자체의 삭제를 인정하므로 오히려 구글 스페인 판결이 인정한 잊힐 권리보다 적극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해 정보주체의 어떠한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일정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고, 명예나 사생활 침해의 경우 기존의 법리를 통해 정보주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잊힐 권리가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필요성을 환기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구체적 권리로 도입하고 그 적용영역을 확대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검색 결과 차단은 인터넷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한 제약이 되고, 특히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적법하였다면 정보 주체의 인격적 이익이 우위를 점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좁게 파악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잊힐 권리의 개념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잊힐 권리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25)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결정.

26) 이에 더해 앞서 살핀 대판 2003. 6. 27, 2002다72194 판결의 판시 내용을 고려하면, 검색 엔진 사업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검색 결과 목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해 삭제 요구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 Review on the Right to Erasure (Right to Be Forgotten) under the Korean Law

Ja-rim Choi

Article 17 of the European Un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which went into effect as of May 25, 2018, specifically provides for the right to erasure (right to be forgotten).

Korea has statutes in place that contain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consistent in granting motions for injunctive relief based on the moral right, and granted motions for injunctive relief based on the moral right and allowed for erasure of a previously released news report.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Act provides for a right that is similar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under the EU GDPR. And the right to erasure of news articles, which the Supreme Court affirmed based on the moral right, is a more ambitious right than the right to demand erasure of search results. Therefore, in order to have meaningful discussions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we first need to look into what interests the right to be forgotten service, in consideration of the background against which the right emerged in today's IT environment.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tes already provide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emergenc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restricts fre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erefore, recognizing a new legal right based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preceded by establishing the detailed criteria regarding the right.

주제어(Key Words):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잊힐 권리, 삭제권,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격권에 기한 금지 청구

European Un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ight to be forgotten, right to erasur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njunctive relief based on the moral right